



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

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대출(계좌번호:)의 거래조건을 제 1 조와 같이 변경하며, 기존 약정내용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.

본 인 : (인) 주소 :

담보제공자 : (인) 주소 :

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

제 1 조 기한연장, 한도변경 및 조건변경 (거래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, 해당되는 "□"에 "V"표시합니다.)

거래조건		변경전		변경후	
□ 대출(한도)금액		금 원		금 원	
□ 대출기간종료일		20 년 월 일		20 년 월 일	
□대출금리의 연이율	□ 고정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선택]	대출기간 종료일까지 () %	□ 고정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 선택]	대출기간 종료일까지 () %	
	□ 변동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선택] ※금리변동주기 ()개월	□ 신규취급액기준 COFIX +() % □ ()물 금융채유통수익률 +() % □ ()물 국고채유통수익률 +() %	□ 변동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2 호 선택] ※금리변동주기 ()개월	□ 신규취급액기준 COFIX +() % □ ()물 금융채유통수익률 +() % □ ()물 국고채유통수익률 +() %	
	□ 혼합 (고정+변동)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, 제 2 호 적용] ※변동금리기간 중 금리변동주기 ()개월	• 취급후()년까지 고정() % • 고정금리 기간 종료 후 다음의 변 동금리 가 적용됩니다. □ 신규취급액기준 COFIX +() % □ ()물 금융채유통수익률 +() % □ ()물 국고채유통수익률 +() %	□ 혼합 (고정+변동) [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3 조 제 2 항 제 1 호, 제 2 호 적용] ※변동금리기간 중 금리변동주기 ()개월	• 취급후()년까지 고정() % • 고정금리 기간 종료 후 다음의 변 동금리 가 적용됩니다. □ 신규취급액기준 COFIX +() % □ ()물 금융채유통수익률 +() % □ ()물 국고채유통수익률 +() %	
	□ 기타	□ 수신금리 연동 + () % □ () + () %	□ 기타	□ 수신금리 연동 + () % □ () + () %	
□ 자동이체일		매월 ()일, 이체계좌번호()		매월 ()일, 이체계좌번호()	
□ 거치기간		()개월, (거치기간 종료일: 년 월 일)		()개월, (거치기간 종료일: 년 월 일)	
□ 담보변경	담보종류		담보종류		
	담보물 소재지		담보물 소재지		
	담보(감정)가액		담보(감정)가액		



☐ 중도상환해약금	☐ 대상 ☐ 비대상	☐ 중도상환해약금률()%	☐ 대상 ☐ 비대상	☐ 중도상환해약금률()%
☐ 기타 조건변경				
조건변경 사유				

제 2 조 대출금리

- ① 대출기간을 연장, 담보변경, 대출한도금액 증액 등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금리요소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 적용 시점에 금리를 재산정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,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대출인 경우에는 조건변경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까지는 기존 금리로 산정한 원리금을 적용하고, 다음 회차부터 변경후 금리로 산정한 원리금을 적용하기로 합니다.

제 3 조 중도상환해약금

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기한연장 한 경우 연장된 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에는 대출거래약정서 제 1 조 및 제 5 조와 이 약정서 제 1 조의 중도상환해약금 거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. 단, 최초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하여 3 년을 경과한 후 상환할 때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제 4 조 인지세의 부담

-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
- ② 대출한도금액을 증액하는 경우, 인지세액은 증액 후 한도금액에 대한 인지세액에서 증액 전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, 한도를 감액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③ 제 1 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 4 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.

제 5 조 자동연장

기한연장 조건에 동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종료일에 대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. 단, 대출기간 종료일 기준,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취급 거절 사유가 발생하거나 상환조건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.